

지급명령신청서

채권자 주식회사 새길관리단 (법인등록번호 110111-0000015)

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00, 0층

대표자 대표이사 윤서진

채무자 주식회사 다운문구 (법인등록번호 110111-0000016)

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00, 0층

대표자 대표이사 박도운

청 구 취 지

-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,86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각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가. 금 2,860,00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
 -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-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독촉절차비용

금 68,880원(내역: 송달료 67,680원, 인지대 1,200원)

청 구 원 인

1. 관리비 부담 근거

채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상가의 관리주체이고, 채무자는 해당 전유부분을 사용하면서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공용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.

2. 월별 관리비 부과와 고지

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6년 4월분 관리비 금 920,000원, 5월분 금 950,000원, 6월분 금 990,000원을 각 월별 관리비 고지서로 부과하였습니다. 각 고지서에는 부과기간, 공용관리비 항목 및 납부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

3. 납부기 도래와 미납

각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채무자는 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. 미납 원장과 입금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한 결과 현재 미지급 공용관리비 원금은 합계 금 2,860,000원이며, 채권자는 2026. 7. 10.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.

4. 결론

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지급 공용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관리규약 및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승낙 자료 1통
2.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월별 관리비 고지서 1통
3. 관리비 산정표 및 부과대장 1통
4. 미납 원장 및 입금계좌 거래내역 1통
5. 관리비 납부 요청 메시지 1통

2026. 8. 7.

채권자 주식회사 새길관리단 (서명 또는 날인)

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